

#### 1 범위

본 일반 판매 조건(“일반 판매 조건” 또는 “GTC”)은 오스트리아 렌징에 본사를 둔 Lenzing Aktiengesellschaft(“매도인”)가 상품 구매자(“매수인”)에게 판매하는 모든 인공 셀룰로오스 섬유 제품 또는 서비스(“상품”)에 적용된다. 본 GTC는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주문 확인서”)의 일부이며,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제시한 사전 제안 또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의 사전 거래 과정과 관계없이 주문 확인서에 지정된 상품의 구매 및 판매를 규제한다. 매도인의 공인 대표가 서명한 서면으로 그러한 약관 또는 계약 형식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은 한 매수인의 추가 적인 또는 상이한 조건 또는 계약 형식은 거부되고 계약의 일부가 되지 않는다.

#### 2 계약의 성립

법적 거래는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 발급 또는 상품 납품(본 약관에 정의된 바에 따름) 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부터 유효하다(“계약”). “납품”은 매도인이 본 GTC의 6.1 조항에 따라 상품을 인도한 시점을 말한다.

주문 확인서가 매수인의 제안과 상이한 경우, 계약은 주문 확인서에 포함된 본 일반 판매 조건을 포함하여 주문 확인서에 따라 형성된다. 매수인이 보충물이나 오차가 있는 주문 확인서를 인증하거나 기타 회신을 하는 경우 그들은 합의로 간주되지 않고 계약에 포함되지 않는다.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주문 확인서를 발행할 때 또는 상품 납품까지 매도인의 견적서는 아무런 계약이 존재하지 않는 시점을 기준으로 제공된다. 모든 견적서는 매도인이 이전에 철회하지 않은 제공날짜로부터 30일 동안만 유효하다. 계약에는 주문 확인서 및 본 일반 판매 조건 이외에 주문 확인서에 언급 또는 첨부된 문서에서 매도인이 지정한 추가 조건이 포함된다.

#### 3 가격 및 세금

주문 확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매도인이 확인한 모든 가격은 유효화되고 오스트리아 렌징에 소재한 EXW 매도인의 시설(Incoterms® 2020)이며, 적용 가능한 판매, 사용 또는 기타 세금, 또는 본 약관에 포함된 상품의 생산, 선적, 판매 또는 사용에 부과되는 기타 정부 수수료(“추가 수수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매도인은 모든 추가 수수료를 (i)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그러한 추가 수수료에 대한 송장을 발행 시 매도인에게 지급 또는 (ii) 관련 세무 당국이 요구하는 경우 관련 세무 당국에 납부한다.

#### 4 지급 조건

4.1 매도인이 사용 허가된 기금을 받을 때까지 대금이 지급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대금은 주문 확인서 또는 매도인 송장(먼저 도래하는 날짜)에 명시된 지급 조건 및 지침 그리고 결제일에 따라 지급되어야 하지만 매도인은 11.3 조항에 기술된 상황에 따라 발송 전에 지급담보를 요구할 수 있다. 주문 확인서 또는 매도인 송장 또는 기타 어떠한 매도인과 매수인 간 약정에도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 날짜가 지정되어 있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으로부터 관련 상품의 유효한 송장을 수령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전액 지급해야 한다. 그러한 상품에 대한 소유권이 매도인에게서 매수인으로 이전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원천 징수 없이 상품의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형태의 세금을 포함한 전액 지급을 회수할 권리가 있다. 주문 확인서에 할인이 적용된 경우, 그러한 할인은 결제일(또는 할인 적용을 위해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이전 날짜)까지 대금이 지급된 경우에만 허용되며, 해당 할인은 결제일까지 대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철회 또는 취소될 수 있으며 그러한 경우 매수인은 할인되지 않은 전체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4.2 수령되는 대금 지급은 가장 오래된 미납 송장에 대해 적립되며 연체료로 인해 발생한 모든 이자에 대해 적용될 것이다. 매도인은 매수인이 주장한 책정 또는 배분과 관계없이 매수인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으로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지급할 채무를 상계할 수 있다. 매수인은 송장의 지급을 보류할 수 없거나 모든 다른 이유로 기타 납부금액을 상계, 반소, 할인, 공제, 원천징수, 감면할 수 있는 권리가 없거나 그렇지 않으면 권리를 보류할 수 있거나 보류를 제기할 수 있다.

4.3 매도인이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결제일까지 대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매수인은 준거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액 또는 연간 18%에 동등한 비율로, 어느 쪽이든 높은 쪽으로, 매도인이 실제로 지급을 받을 때까지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 또는 송장에 명시된 기한 내의 미결제 잔액에 대한 벌칙 금리가 아닌 연체료를 매도인에게 지급해야 한다. 매수인이 주문 확인서에 견적을 낸 통화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 또는 기한 내에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결과로 인해 매도인이 통화 손실의 피해를 입으면 매수인이 보상해야 한다.

#### 5 수거

매수인의 빚진 금액을 수거하기 위해 매도인이 미수금 처리 대행사 또는 제삼자를 고용하거나, 이러한 금액을 수거하고 매수인이 부여한 선취특권의 집행 등, 상품의 판매 또는 구매와 관련된 권리를 집행하기 위해 소송 절차를 시작하는 경우, 매수인은 변호사 보수를 포함하되, 여기에 국한하지 않고, 이러한 소송 절차로 인해 매도인에게 발생된 미수금 처리 대행사 및 기타 제삼자의 수수료 그리고 모든 비용을 매도인에게 상환해야 한다.

#### 6 납품, 손실 위험 및 보유한 선취특권

6.1 매도인이 견적서 또는 주문 확인서에 언급한 납품일은 매도인이 상품을 발송할 준비가 완료될 것으로 예측한 날짜이며, 매도인이 성의 있지만 보장하지 않는 제공 날짜 또는 수락 날짜이다. 매도인이 상품(또는 그 일부)을 정확한 시간에 납품하지 못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수인은 상품 전체를 수락하고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상품 납품은 지연될 수 있으며, 매수인은 상품 납품에 시간이 중요하지 않다는 데 동의한다. 매수인이 납품을 수령하지 못하는 데 관련된 모든 보관, 보험, 기타 비용은 매수인이 책임져야 하고 매도인이 발생한 이러한 모든 요금은 송장 제출 후 30일 이내에 매수인이 지급해야 한다. 또한, 매수인이 명시된 납품 시간에 매도인이 납품할 수 있도록 적절한 납품 지침, 문서, 라이선스 또는 권한을 제공하지 않거나 상품을 납품 받지 못해서 상품에 대한 모든 위험이 매수인에게 전달되는 경우, 매도인이 사용할

수 있는 구제 수단이나 기타 권리는 침해받지 않고 상품은 납품된 것으로 간주된다. 매도인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최저 가격으로 상품을 판매할 수 있고 (매수인의 계약을 준수하지 않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언급된 보관, 보험, 판매 및 기타 비용을 차감한 후) 초과되거나 부족한 계약 가격에 대해 매수인에게 해명할 수 있다. 주문 확인서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한, 모든 상품의 납품은 오스트리아 렌징에 소재한 EXW 매도인의 시설(Incoterms® 2020)이며, 상품의 손실 또는 손상 위험은 운송회사가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인수하는 때에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납품 후 모든 손실 또는 손상에 대해서는 매수인이 운송회사에 직접 청구해야 한다. 주문 확인서에 Incoterm 2020 EXW 이외의 조건(예: CPT 또는 CIP)이 지정된 경우, 납품은 손실 또는 손상 위험 및 비용 할당을 포함하여 그러한 Incoterm 2020 에 따라 이루어진다. 안전하지 않거나 잠재적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인 경우, 매도인은 재량에 따라, 적재/하역/전송 또는 취급하는 데 제시되는 운송수단, 컨테이너 또는 보관소를 거부할 수 있다. 모든 납품에 대해 매수인이 모든 상품의 적재 또는 하역을 단독으로 책임진다. 매수인이 선적에 이용되는 운송수단 또는 컨테이너로부터 전체 상품을 적재 또는 하역하지 못할 경우 (i) 모든 잔류 상품은 매도인이 유익하게 사용하거나 재사용할 수 있도록 매수인이 유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인이 출발지에서 수령 및 수락할 때 매도인의 재산으로 귀속된다. (ii) 매수인은 이러한 잔류 상품에 대한 금융상의 신용, 지급 또는 기타 보수를 받을 수 없다. 그리고 (iii) 매도인이 출발지에서 수령 및 수락할 때까지 매도인은 이러한 잔류 상품의 운송에 대해 단독으로 책임을 진다(화물운송비, 선적서류, 그밖에 모든 법률 관련 규정 준수 포함). 매도인 또는 그의 운송회사가 어떤 이유에서건 선적항/장소에 상품이 도착할 때 선상이나 기타 수송열차 형태에 상품을 배치할 수 없는 경우, 상품의 물품창고 수령은 매수인에 의한 수령으로 취급해야 한다.

**6.2** 매수인은 계약 중량 또는 수량에서 10% 이하로 변화하는 중량이나 수량, 그리고 매도인이 거래에서 수용되는 제작 허용오차 내에서 벗어나는 협정 사양으로 납품한 상품을 수락하고, 납품된 실제 중량 또는 수량에 비례하는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매도인의 포장 목록에 명시된 중량 또는 수량은 명백한 잘못을 제외하고는 매수인이 받거나 납품 받은 양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된다.

**6.3** 상품의 판매에 대한 구매가격의 결제 및 모든 수익을 보장하기 위해, 매수인은 전액을 지급할 때까지, 매도인을 위해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획득한 상품 및 재고 상품에 대한 선취특권 그리고 모든 판매 또는 기타 처분 수익을 생성하고 부여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이러한 구매금의 선취특권을 생성하고 보존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재무제표 및 수정 사항을 실행하는 데 합의하며, 매수인은 이로써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그 이익을 보호하고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언제든지 모든 관할권에서 재무제표를 실행하고 제출할 수 있도록 허용 및 위임하며 구체적으로 매도인이 그러한 재무제표를 제출하도록 허용한다. 생성된 선취특권은 준거법에 따라 해석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매도인이 이러한 상품의 구매금 선취특권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매수인은 본인의

재고품에 대한 선취특권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이름 및 주소를 매도인에게 제공하는 데 합의한다. 매수인이 동일한 전액을 매도인에게 이미 지급하지 않은 한, 매도인은 상품이 운송회사에 보관되어 있는 동안, 반품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한다.

**6.4** 각 납품은 별도의 계약으로 처리되며,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에 명시되지 않는 한 부분 납품이 허용된다. 따라서 특정 납품의 불이행 또는 이와 관련된 매도인의 계약상 의무의 위반은 잔여 납품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로 인해 매수인이 계약, 관련 주문 확인서 또는 기타 계약 또는 주문 확인서를 취소 또는 거절된 것으로 간주할 수 없다. 본 6.4 조항에 따라 별도 계약이 있는 경우 각 별도 계약은 본 GTC 에 의해 규제된다.

**6.5** 반품 가능한 포장재는 매수인에게 요금이 부과되지만, 매수인이 상품을 수령한 후 30 일 이내에 깨끗하고, 비어있고, 안전하게 밀폐되고, 양호한 상태로 반품하는 경우, 매도인은 부과액을 매수인에게 신용 입금할 것이다. 특별한 포장 요구 사항은 환불할 수 없는 추가 요금으로 부과된다. 매수인은 포장에 관련하여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에 명시된 기타 요구 사항 또는 모든 반품, 폐기 사항과 함께 모든 준거법 및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7 매도인의 품질 보증

**7.1** 매도인은 납품 시 다음을 보장한다.

- a. 상품이 정상적 소유권으로 판매된다. 그리고
- b. 상품이 아래 7.4 및 7.5 조항에 따라 (i) 모든 실질적 측면에서 매도인의 공표된 현재 상품정보책자를 준수하고, (ii) 상품정보책자가 없는 경우 모든 실질적 측면에서 (위 6.2 조항에 언급된 공차에 따라) 주문 확인서(“매도인의 품질 보증”)에 기재된 모든 사양을 준수하고, (iii) 인공 셀룰로스 섬유 산업에서 인정되는 일반적 표준에 따라 양한 재료 및 기술로 제조된다.

매도인의 품질 보증은 (보관 또는 사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상품에 관련되는 매도인의 모든 지시(구두 또는 서면) 및 공정 거래 관행을 엄격하게 준수하는 조건 하에 제공된다.

**7.2** 매수인은 수령 즉시 상품을 검사해야 한다. 매수인은 납품이 불완전 또는 실패했거나 배송 중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 매도인에게 즉시 또는 어떤 경우에도 상품 수령 후 3 일 이내에 통지해야 한다. 상품이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매수인은 위의 사항 중 어느 것이라도 합리적으로 인식해야 하거나 인식하게 되는 날짜 이후 15 일 이내에,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 a. 납품일로부터 3 개월 이전;
- b. 상품이 사용되거나 처리과정에 들어간 후 30 일 이내에 매도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매수인은 그러한 통지를 하지 않거나 그러한 통지 후 상품을 추가로 사용할 경우 통지했어야 하는 문제와 관련된 모든 청구를 철회하고

상품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되며 매도인은 해당 상품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7.3** 7.2 조항에 따라 상품이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실질적으로 준수하지 않거나 납품이 불완전 또는 실패했거나 배송 중 손실 또는 손상이 있음을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경우, 매도인은 이러한 실패를 교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기회를 제공받아야 하며, 매도인이 그렇게 하지 않거나 할 수 없으면, 매도인은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계약 비율(또는, 매도인의 불이행 이외의 여러 이유로 상품의 가치가 떨어지거나 사용되었거나 처리과정에 들어간 경우, 계약 가격의 합당한 부분)에 비례해서 상품의 가격을 환불하거나, 적당한 기간 내에, 상품(또는 상품의 결함이 있는 부분)을 (합리적으로 실행 가능한 경우) 무료로 교체한다. 이러한 모든 실패와 관련하여, 교정, 환불, 교체가 매도인의 유일한 책임이다.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포함하여, 상품 교체는 본 일반 판매 조건에서 다룬다. 매도인의 품질 보증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장되는 상품은 매도인이 검사할 수 있도록 가능한 오래 보존되어야 하며, 교체되거나 환불되는 경우 (매도인의 비용으로) 매도인이 합당하게 요청하면 상품은 매도인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품질 보증을 준수하지 않은 상품에 대한 매수인의 유일한 배타적인 구제 방법은 본 7.3 조항에 지정된 환불 또는 교체이다.

**7.4** 7.1 조항 및 매도인의 품질 보증은 이등품, 잔여 재고, 견본, 또는 저급한 상품, 폐기물 또는 폐품으로 판매되는 상품, 또는 아직 시험 단계에서 판매되거나 마케팅되는 상품(“**저급한 상품 및 시험 상품**”으로 총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의심의 여지를 피하기 위해 7.2 및 7.3 조항은 납품이 불완전 또는 실패했거나 배송 중 손실 또는 손상이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 저급한 상품 및 시험 상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7.5** 매도인은 상품의 사양을 수정할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수정은 특히 법률, 규정 또는 정부 요구에 따라 필요한 경우 특정 주문 확인서와 관련되지 않은 모든 상품에 적용된다.

## 8 보증에 대한 부인

**8.1**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매도인은 특정 목적에 대한 적합성, 위반 없음, 상품성 등, 상품에 대하여,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섹션 7 이하를 제외한 모든 품질 보증을 부인하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청구를 포기한다. 모든 진술(서면 또는 구두), 도면, 사진, 사양, 매도인이 발행한 광고, 매도인의 카탈로그나 브로슈어에 포함된 설명이나 그림은 상품에 설명되어 있는 대략적인 아이디어를 제공하기 위한 유일한 목적으로 발행되거나 출판된다. 이들은 계약의 일부를 구성하지 않으며 매수인에게 의존하지 않을 수 있다.

**8.2** 상품과 (명義에 관련된 묵시적 품질 보증 법률은 제외하지만, 조건, 성능, 만족스러운 품질, 용도의 적합성, 설명이나 견본에 부합, 관리 및 기술 또는 설명의 준수에 관련된 모든 것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 관련한 매도인의 보증은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계약, 불법 행위, 관습법, 법령 또는 다른 방법으로 발생하거나, 매도인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인과 관계없이) 다른 모든 품질

보증, 의무, 설명, 책임, 권리, 조건의 대용이며, 이러한 모든 품질 보증, 의무, 설명, 책임, 권리, 조건은 법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명백히 제외되고 매수인은 이로 인해 어떠한 청구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정한다. 본 일반 판매 조건에 기술된 범위를 벗어난 어떤 보증도 하지 않는다.

## 9 책임 제한

**9.1** 매도인의 책임에 대한 다른 모든 제한을 침해하지 않는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 (유효하거나 아니거나):

- A) 매도인은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에서) 어떤 경우에도 경미(단순) 또는 중대 과실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B) 어떤 경우에도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에서 또한 매도인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인의 과실 또는 기타 행위, 불이행 또는 태만과 관계없이) 매도인은 다음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 (I) 영업권, 사업 또는 매출 또는 예상 절약의 손실;
  - (II) 사용 손실;
  - (III) 명성 손실;
  - (IV) 이익 또는 예상 이익의 손실 또는 사용 또는 비용;

- (V) 매수인이 본 계약에 따른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 발생한 비용(모든 법적 비용 및 경비 포함);
- (VI) 상품 또는 계약으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원인과 관계없이) 발생하는 모든 간접적, 특수적 또는 결과적 손해 또는 손실 또는 기타 부수적 보상에 대한 청구;
- (VII) 매수인의 제삼자에 대한 상품(또는 상품을 포함하거나 상품에 의존하는 다른 상품 또는 서비스) 재판매 또는 재판매 의도로부터 또는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손해 또는 손실(직접적, 간접적 또는 결과적);
- (VIII) 특히 인명이나 재산 피해에 대한 청구에 국한되지 않고 저급한 상품 및 시험 상품 또는 계약, 상품과 관련된 모든 제삼자의 청구;
- (IX) 매수인이 시장에서 대체 상품을 구입할 수 없음에 대한 모든 책임.

C) 매도인의 상품 또는 계약과 관련한 중합적 책임(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에서 또한 계약과 관련하여거나 계약에 따라 발생하는 부주의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매도인 또는 그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인에 의한 법적 의무 위반, 허위 진술, 과실 또는 기타 행위, 불이행 또는 태만)은 추가 요금, 부가가치세 및 기타 모든 세금, 수수료 또는 세금, 운송 및 보험 관련 비용을 제외한 제품의 순 계약 가격으로 제한된다.

**9.2** 법률에서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또한 매도인의 품질 보증에 대한 침해 없이, 매수인의 유일한 구제 방법은 위에 규정된 피해 보상금이다.

**9.3** 매수인이 그 원인이 되는 상황을 인식하게 되거나 인식해야 할 때로부터 1 년 이내 또는 개별 계약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경우

관계법의 제한 내에서 매도인에 대해 소송 절차를 제기하지 않는 한 상품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게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없다.

**9.4** 본 계약은 다음 사항에 대한 당사자의 책임을 배제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 A)** 해당 당사자나 그의 직원, 대리인 또는 하청인의 심한 태만에 의한 사망이나 신체적 상해;
- B)** 사기 또는 약의 부실표시; 또는
- C)** 법률에 따라 책임이 제한 또는 배제될 수 없는 다른 모든 문제.

**9.5** 매도인이 매수인과 별도로 서면 계약에 따라 비용을 받고 그러한 표명을 했거나 및/또는 조인 또는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하지 않은 한, 법률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매도인은 계약, 불법 행위 또는 기타에서 또한 매도인, 그 대리인 또는 직원의 부주의와 관계없이 상품 또는 계약과 관련하여 매도인에 의해 또는 매도인을 대리하여 (계약 여부 또한 계약일 전후와 관계없이) 제공된 모든 표명, 조인 또는 지원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9.6** 본 섹션 9는 모든 기본적 계약 조건에 대한 매도인의 근본적 위반 또는 위반에도 불구하고 적용된다.

## 10 불가항력 및 기타 조건

**10.1** 매도인에 의한 계약 미준수가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이 계약 준수를 방해 또는 제한하는,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특정 상황 (“불가항력”)과 관련되는 경우 (매도인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은 어떤 위반 또는 손해에 대해서도 매수인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

- a.** 어떤 방식으로든 상품에 필요한 라이선스의 부여 지연 또는 취소; 또는
- b.** 행위, 제한, 규정, 부칙, 금지 또는 정부, 의회나 지방 관청 부서에서 실행되는 모든 종류의 조치; 또는
- c.** 파업, 직장 폐쇄 또는 기타 쟁의 행위나 무역 분쟁 (매도인, 또는 제삼자의 직원을 포함하거나 안 함); 또는
- d.** 원료, 노동력, 연료, 전력, 부품이나 기계류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 또는 지연; 또는
- e.** 전쟁, 테러, 폭동, 내란, 사이버 범죄 공격 및 그 영향, 악의적인 피해, 공장이나 기계류의 고장, 자연 재해, 극심한 악천후, 공급자나 하청인의 태만, 화재, 전염병, 유행병, 격리 규제, 또는 해상 위험.

**10.2** 매도인은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통제할 수 없는 상황으로 인해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계약에 따른 전부 또는 일부 의무를 매수인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고 정지하거나 종료할 수 있다.

- a.** 매도인이(매도인의 부주의 여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인 수단으로 상품을 제조, 공급, 납품하고

자료를 획득할 합리적 수단이 상당히 훼손된 경우

- b.** 시장 및 상품 수요가 현저히 붕괴하여 매도인의 의무를 계속 이행하는 것이 합리적인 관점에서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10.3** 10.1 조항에 규정된 불가항력 사건 또는 10.2 조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매도인은 그러한 상황의 존재, 사건의 성격 및 예상 기간에 대해 서면으로 매수인에게 통지한다. 매도인은 불가항력 사건 또는 10.2 조항에 설명된 상황이 발생할 경우 책임 없이 계약(또는 그 일부)을 종료할 수 있다.

## 11 종료 및 정지

**11.1** 매수인이 취소 또는 연기로 인해 매도인에게 발생하는 모든 손실, 비용(사용된 모든 노동 및 자재 포함), 손해, 수수료 및 경비에 대해 전액 및 필요에 따라 매도인을 면책한다는 조건에서 매도인이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도인이 수락한 주문을 매수인이 취소 또는 연기할 수 없다.

**11.2** 매도인은 (그의 다른 권리나 구제 방법들을 침해하지 않고) 11.3 조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계약의 미결제 중 일부나 전체에 대한 매수인의 수행을 어떠한 책임 없이 종료하거나 정지할 수 있고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서 매수인의 모든 미납금은 즉시 지급될 수 있어야 하고/또는 매도인은 섹션 12에 따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매도인은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계약 또는 기타 계약에 따른) 이전 납품과 관련된 모든 청구를 조사하는 동안 납품을 중단할 수 있다.

**11.3** 관련된 상황들:

- a.** 6.1 조항에 따른 필요한 날짜까지 매수인이 상품을 납품받지 못하거나 기한 내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계약의 기타 조건을 위반하거나 또는 매수인과 매도인 사이에 체결된 상품의 구매나 판매 또는 서비스를 위한 다른 모든 계약 또는 본 계약에 적용할 수 있는 매도인의 다른 모든 보험이나 수출 보험 요구 사항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또는
- b.** (i) 매수인의 상품이나 재산 또는 그에 대해 획득된 모든 것을 압류 또는 집행(법적 또는 형평법상)하는 경우 또는 (ii) 매수인이 채무를 위해 매도인의 재산인 상품을 어떤 형태로든 담보로 제공하는 경우 또는 (iii) 매수인이 채권자들과 타협하거나 협정을 맺는 경우 또는 (iv) 만기가 되었을 때 매수인이 파산하거나 부도가 나가거나 그 빚을 지급할 수 없는 경우 또는 (v) 관재인, 관리인, 행정적 관재인 또는 관리인 또는 담보 권리자가 매수인의 사업이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에 임명되거나 소유권을 획득하게 되는 경우 또는 (vi) 매수인이 채권자 회의(공식 또는 비공식)를 소집하는 경우 또는 (vii) 구조조정 또는 합병 목적의 자발적 청산을 제외하고 매수인이 청산을 (자발적 또는 강제적) 시작하는 경우 또는 (viii) (파산

없이 합병 또는 구조조정 목적 이외에) 매수인을 해산하는 모든 결의 또는 청원이 매수인의 관점에서 행정 명령을 부여하기 위해 통과되거나 제시되어야 하는 경우 또는 (ix) 매수인이 관련 파산법의 의미 내에서 채무를 지불할 수 없는 경우 또는 (x) 매수인이 사업을 중단하거나 중단할 위험이 있는 경우 또는 (xi) 매도인이 매수인과 관련하여 상기한 사건들이 발생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우려하여 적절히 매수인에게 통보하거나 매수인이 외국 법률에 따라 유사한 소송을 벌이고 있는 경우; 또는

- c. 매도인은 발생했거나 발생할 11.3.(b) 조항의 사건을 의심할 수 있거나, 매수인이 기한 내에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서, 매수인에게 통지할 수 있는 합당한 근거를 보유하는 경우; 또는
- d. 매도인의 주문 확인서에 지정된 상품과 관련한 생산비(사용된 모든 인건비 및 재료비 포함)가 매수인이 상품 주문 확인서에 합의한 구입 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11.4** 게다가, 매도인은 이러한 한계가 통지되었든 안되었든, 매수인을 위해 허용할 준비가 되어있는 금융상의 신용 한계에 도달한 매수인 계좌의 미납금을 (실제로 지급 기한이든 아니든) 매도인이 고려하는 경우, 매수인에게 통지함으로써, 매수인과 함께 보유할 수 있는 계약 및/또는 다른 모든 계약에 따른 납품을 중단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매수인이 체납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도).

**11.5** 매수인이 11.3.(c) 조항 또는 11.4 조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후 3 일 이내에 매도인이 합당하게 수락할 수 있는, 계약 가격의 담보를 제공하는 경우, 매도인은 통지를 철회해야 한다.

## 12 위험 및 명의

**12.1** 위 6.1 조항에 규정된 대로 납품 시 **상품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12.2** 단, 매도인은 상품의 소유권을 다음 기한까지 유지해야 한다.

- a. 모든 추가 수수료, 부가가치세 또는 기타 유형의 세금 등 어떤 경우에도 매수인으로부터 받을 기한이 된 다른 모든 금액을 포함하여 매도인이 공급한 모든 상품에 대한 전체 금액을 사용 허가된 자금으로 지급받았을 때; 또는
- b. 12.3 조항에 따라, 매수인이 상품을 혼합하거나 가공 처리해서 그 정체성을 상실하거나 회복불능이 될 정도로 통합되거나 기타 상품과 혼합되었을 때; 또는
- c. 무관한 제삼자가 공정하게 선의로 매도인으로부터 상품을 구매할 때.

**12.3** 별도의 독립적인 조건으로서, 매수인은 12.2.(b) 조항에 언급되어 있는 다른 상품의 값이 (매수인에게 부과된 가격으로 계산되었거나, 부과된 가격이 없다면, 제조에 대해 매수인에게 부과되는 공장 직접비) 12.2.(b) 조항에서 언급한 상품의 청구서 값을 초과하지 않는 한, 12.2.(a) 또는 (c) 조항의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결과물

(“다운스트림 상품”)이 매도인의 재산이라는 12.2.(b) 조항에 설명된 상황에 합의한다.

**12.4** 상품 또는 다운스트림 상품의 소유권이 매수인에게 이전될 때까지, 매수인은 반드시

- a. 매도인에게 합당히 만족스러운 완전한 대체 가치로 모든 위험에 대비하여, 매도인을 대신하되 매수인의 비용으로 상품을 만족스러운 상태로 유지하고 보장해야 한다;
- b. 매도인의 신탁으로 12.4.(a) 조항에 언급된 모든 보험의 수익을 보류하고 다른 자금과 혼합하거나, 은행 당차 계좌로 수익을 납부하지 않아야 한다;
- c. 통상적인 거래 과정으로만 (계약이 금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상품 또는 다운스트림 상품의 소유물을 판매, 사용 또는 분배한다(그러한 판매에서 매수인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매도인의 재산을 판매하는 것이고 그러한 판매에서 매수인은 주채무자로 거래한다);
- d. 매도인의 신탁 대리인으로서 상품 및 다운스트림 상품을 보류해야 한다;
- e. 타사 또는 매수인의 다른 모든 상품으로부터 소유물의 각 납품을 분리하고 합리적으로 유지해서 매도인의 재산으로 명확하게 식별할 수 있는 방법으로 표시해야 한다; 그리고
- f. 상품에 관련되어 포장을 하거나 불분명한 식별 표시를 하거나 파괴, 훼손하지 않아야 한다.

운영, 안전, 정비, 장비, 크기 및 용량, 오염 방지에 관련된 사항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계약에 따라 일단 매도인이 상품을 납품하면 매수인은 상품에 대한 모든 준거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

**11.3.(a) ~ (d)** 조항에 설명된 상황에서, 매수인의 소유 상품과 다운스트림 상품을 분할하거나 사용, 판매할 권리는 즉시 종료되어야 하고, 매도인은 상품 및 다운스트림 상품을 회수하거나 판매할 수 있고 매수인은 매도인의 다른 구제 방법들을 침해하지 않고, 매도인, 그의 대리인 및 직원이 상품을 조사하거나 그러한 목적으로 매수인의 소재지에 입장할 수 있도록 언제든지 변경할 수 없는 허가를 부여할 수 있다. 매도인이 다운스트림 상품을 회수 및/또는 판매하는 경우 계약에 따라 매도인에게 납부해야 할 다운스트림 상품의 초과 가치는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추정하여) 매도인의 회수 및 폐기 비용을 제하고 매수인에게 지급된다. 이러한 의무는 계약의 종료 후에도 잔존한다.

**12.5** 매수인은 채무를 위해 매도인의 재산인 상품을 담보로 제공하면 안 된다(유치권 등).

## 13 안전 조건

매수인은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상품의 취급, 하역, 방출, 보관, 운송, 사용, 폐기, 공정, 혼합, 반작용 (“사용”)과 관련된 위험을 인정하고 이러한 상품이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물질과 조합되어 사용되었는지 공정에서 사용되었는지, 사람의 건강이나 사람 또는 환경 안전에 해로운 사용에 관련하여 그의 직원, 대리인, 계약자, 고객에게 조언하는 책임을 진다. 매도인이 상품에 대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매수인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수인은 상품을 사용할 직원, 대리인, 계약자 및 고객에게 매도인으로부터 수시로 수령할 수 있는 MSDS 및 모든 보충 MSDS 또는 서면 경고를 조인하는 데 특별히 합의한다.

### 14 면책 및 제삼자 청구

**14.1** 법률에 의해 달리 금지되지 않는 한,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경우에 따라 다른 Lenzing 그룹 회사(즉, Lenzing Aktiengesellschaft의 통제 또는 공동 통제 하에 있는 모든 회사) 및 해당 임원, 이사, 직원 및 대리인을 다음 원인으로 발생하는 손실, 청구, 부상 또는 책임(제조물 책임법 사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으로부터 완전히 면책하고 방어한다.

- a. 매수인이 Lenzing 상표를 비롯하여 매도인의 또는 Lenzing 이름, 브랜드, 로드 또는 상품을 사용;
- b. 매수인이 본 일반 판매 조건, 계약 또는 관계법의 의무를 위한 또는 제삼자의 권리를 침해;
- c. 매수인 상품을 포함하는 서비스 및 다른 상품을 포함하여 상품 또는 서비스를 사용, 판매, 마케팅 또는 제조.

**14.2** 면책 당사자는 매수인에게 관련 청구를 통지하고, 책임을 최소화하고/또는 추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매수인의 합당한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고, 매수인이 합당한 조건에 따라, 법적 조치 및/또는 합의 협상 행동을 통제하도록 허용해야 한다. 매수인은 매도인 또는 해당할 경우 면책 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매도인 또는 면책 당사자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모든 합의 판정 또는 합의 계약을 체결하지 않아야 한다.

### 15 상표

매수인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가 모든 상표 및 상표명, 서비스 마크, 트레이드 로고, 브랜드 및 트레이드 드레스 또는 그 약어 또는 변형,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든 매도인이 적용 또는 사용하는 기타 상업적 보호 권리(“Lenzing 상표”로 총칭)의 독점적 소유자임을 인정하며, 매수인은 Lenzing 상표에 대한 권리를 얻지 못한다. 매수인은 Lenzing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등록 또는 사용하거나 제삼자가 등록 또는 사용하도록 허용하지 않는 데 동의하며, 법률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Lenzing 상표에 대해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Lenzing Aktiengesellschaft에게 양도하고 이전하는 데 동의한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사전에 서면으로 승인하지 않은 어떤 방식으로든 매도인이 적용 또는 사용하는 상표 또는 상표명을 사용할 수 없으며, 매수인이 Lenzing 상표를 사용하기 위한 승인은 매수인과 매도인 간에 별도로 체결한 상표 라이선스 계약에 따라야 한다. 상기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부록 .1에 규정된 제한적 라이선스를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 16 그 외 여러가지

**16.1** 매도인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매수인은 계약이나 그 일부를 지정할 수 없다. 매도인은 사람, 합자회사, 회사에 대한 계약에 따라 권리나

의무의 전체 또는 그 일부를 지정하고, 라이선스를 주거나 하청할 수 있다.

**16.2** 본 계약은 당사자들 사이에, 고용주 또는 직원, 협력, 주채무자/대리인 또는 모든 종류의 합작 투자 관계를 형성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된다.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상대방의 이름으로 어떤 종류의 의무를 떠맡거나 계약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

**16.3** 매도인이 계약의 조항들을 부분적으로 집행하거나 집행하는 데 실패하거나 지연하는 것을 당당한 권리의 표출이나 더 이상의 위반 제재에 관련된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16.4** 계약은 주문 확인서에서 숙고되는 매매 거래에 대하여 당사자들의 완전한 이해를 성립하며, 그와 관련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서면 및 구두로 이루어진 이전의 모든 합의 및 이해를 대체하고 교체한다.

**16.5** 법 제정 또는 규정에 따라 계약 또는 본 일반 판매 조건의 조항 전부 또는 일부가 불법, 무효, 시행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는 경우, 법이 허용하는 최대 범위까지 영향을 미치거나, 그렇지 않으면, 삭제된 것으로 간주되고 본 계약 및/또는 일반 조건의 나머지 조항의 합법성, 유효성, 집행 가능성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6.6** 매수인과 매도인이 서명한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본 일반 판매 조건(당사자 사이에 특약으로 합의된 일반 조건을 포함)의 모든 변형은 적용할 수 없다.

**16.7** 계약에 따른 매도인의 각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은 계약에 포함 여부와 관계없이 매도인의 다른 권리 또는 구제 방법을 침해하지 않는다.

**16.8** 매수인에 의한 계약 조항의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매도인의 포기는 후속 위반 또는 불이행에 대한 포기로 간주되지 않으며 계약의 다른 조건에 결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16.9** 매수인은 홍보나 마케팅 자료 (그러나 당사자의 합당한 통제를 벗어나는 법정권한, 회계당국,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공개나 내부 유통의 발표를 전적으로 포함하지 않음)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하지 않고, 본 계약이나 계약의 주제와 관련한 웹사이트, 또는 제안된 보도자료 또는 공표에 매도인을 이름으로 참조하지 않는다.

**16.10** 3, 5, 6, 8, 9, 11, 12, 13, 14, 16, 17, 18 조항들은 규정 계약의 종료 후에도 잔존한다.

**16.11** 계약이 제삼자를 위해 체결되지 않는다는 데 동의하며, 계약의 어떤 조건도 제삼자에게 계약 조건을 집행할 권리를 부여하거나 계약 조건의 혜택을 부여하지 않는다.

### 17 법률 준수

**17.1** 매수인이 상품을 사용하거나 운송하고, 취득하기 위해 정부 또는 다른 관청의 라이선스 또는 동의서가 요구되면, 매수인은 동일한 경비로 그들을 획득하고, 필요한 경우, 매도인의 요청에 따라 동일한 증거를 제공한다. 매도인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발송을 보류하거나 지연할 자격을 부여받지만, 매수인은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대금 지급을 보류하거나 지연할 자격을 부여받지 않는다. 이러한 불이행에

따라 매도인에게 발생한 모든 경비 또는 요금은 매수인이 매도인의 서면 요청을 수령한 후 10 일 이내에 지급한다.

- 17.2 미국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매수인은 그러한 판매, 공급 또는 납품 당시 미국 정부나 유엔(UN)에서 선언한 통상 금지/제한 당사자 또는 목적지로 직간접적으로 상품을 판매, 공급 또는 납품하지 않는다. 매수인은 EU 규정 또는 기타 관련 규정에 의해 통상 금지/제한되지 않음을 확인한다. 매도인의 요청 후 2 일 이내에, 매수인은 이러한 조건에 따라 납품된 상품의 최종 목적지를 확인할 수 있는 해당 문서를 매도인에게 제공한다.
- 17.3 매도인은 적용 가능한 모든 자금세탁방지법, 규정, 관련 규칙(수시로 시행)을 준수하고 있음을 서약하고, 보증하며 책임을 진다.
- 17.4 매수인은 지급에 사용되는 자금이 국제 협약 또는 협정에서 금지되거나 준거법 또는 규정에 따라 불법으로 간주되는 자금 세탁 또는 기타 활동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파생되거나 파생될 것으로 의심할 이유가 절대적으로 없음을 서약 및 보증하며, 매수인은 자금 세탁 방지와 관련된 모든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매도인이 합리적으로 요청하는 모든 정보를 매도인에게 즉시 제공하는 데 동의한다.

## 18 준거법

- 18.1 계약, 본 일반 판매 조건 및 이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계약적 의무는 법률 규정의 충돌과 관계없이 매도인이 등록된 지역에 적용되는 법률에 따라 규제 및 해석되어야 한다. 국제 물품 매매 계약에 관한 UN 협약(CISG)은 적용되지 않는다. 매수인은 매도인이 등록된 지역의 관할법원이 상품 또는 계약 또는 본 일반 판매 조건 또는 모든 관련된 비계약적 의무와 관련된 모든 청구 또는 소송을 심리할 유일한 관할권을 가지는 데 동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인은 다음과 같은 조항들에 따라 소송 절차를 중재하기 위해 또는 다른 관할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 18.2 매수인과 매도인은 계약 및/또는 본 일반 판매 조건 또는 상품 주문에 관련되거나 그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해 당사자 중 하나가 상대방에 제기하는 법적 조치, 소송 또는 반소의 배심 재판을 포기한다.
- 18.3 유효성, 위반, 종료 또는 무효에 관한 분쟁을 포함하여 본 계약 또는 본 일반 판매 조건에 관련되거나 계약 외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또는 청구는 매도인이 단독 결정할 수 있고 국제 상업 회의소 조정 및 중재의 규칙에 따라 임명된 한 명 이상의 중재인이 최종적으로 타협할 수도 있다. 중재 장소는 매도인의 등록 소재지이어야 한다. 중재 절차의 언어는 영어이어야 한다.

## 19 언어

본 일반 판매 조건은 영어로 작성된다. 본 일반 판매 조건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번역되어서 해석 및 의미의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 영어 버전은 이러한 일반 판매 조건의 준거 언어이다.

-----끝-----

### 부록 J/1

#### 1 제한적 라이선스

- 1.1 Lenzing Aktiengesellschaft(Werkstraße 2, A-4860 렌징, 오스트리아)는 상표 “LENZING” ( “라이선스된 상표” )의 소유자이다. 라이선스된 상표는 전 세계 145 여 개국에서 다양한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등록되어 있다.
- 1.2 납품(일반 판매 조건에서 정의됨) 시점을 기준으로, Lenzing Aktiengesellschaft 는 매수인에게 다음 조항에 규정된 대로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제한적 라이선스를 부여한다.
- 1.3 Lenzing Aktiengesellschaft 는 매수인이 섬유 및 필라멘트 제품(예: “LENZING™ Modal” 또는 “LENZING™ Lyocell” )에 사용하는 섬유 유형의 명칭의 일부로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이고, 양도 불가능하고, 2 차 라이선스가 불가능하고, 로열티가 없는 라이선스를 매수인에게 부여한다. 단 매수인의 해당 제품이 (일반 판매 조건에 정의된 대로) 각 상품을 30% 이상 포함하고, 라이선스된 상표의 사용이 정확하고 오해를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이하에서 “라이선스” 라고도 한다. 본 부록에 명시된 제한 내에서 라이선스는 라이선스된 상표가 등록된 국가로 지리적 제한이 적용된다.
- 1.4 매수인은 라이선스된 상표를 대문자로 사용하고 [brandingservice.lenzing.com](http://brandingservice.lenzing.com) 에서 제공되는 브랜딩 지침에 따라 사용해야 한다. 또한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매수인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제시한 모든 합리적 지침을 준수해야 한다. 이 밖의 사용은 명시적으로 금지된다. 특히, 이에 국한되지 않고, 매수인은 라이선스된 상표를 어떠한 종류의 품질 보증 또는 승인 마크로 사용하거나 라이선스된 상표가 어떤 종류의 품질 보증 또는 승인 마크를 구성할 것이라는 인상을 조성하면 안 되며, 매수인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상품을 포함하는 제품의 생산자라는 인상을 절대 조성해서는 안 된다. 매수인은 이 라이선스를 어떤 상표등록기관에도 등록해서는 안 된다.
- 1.5 라이선스된 상표 및 이와 관련된 영업권의 소유권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 에 있으며 매수인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라이선스된 상표에 대한 권리를 보유함을 인정한다. 본 부록에 명시적으로 규정된 바 이외에, 어떤 조항도 라이선스된 상표에 대한 권리, 소유권 또는 이해를 양도, 이전 또는 부여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매수인은 라이선스된 상표 또는 라이선스된 상표와 유사한 기호를 어떤 등록기관에도 등록하거나 제삼자가 등록하도록 허용하면 안 된다.
- 1.6 라이선스된 상표는 해당 상표가 등록되지 않은 국가라도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단독 이익을 위해 사용해야 한다. 매수인이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그와 관련된 권리를

획득하는 경우 매수인은 어떤 보상도 없이 그러한 권리를 Lenzing Aktiengesellschaft 에 양도한다.

#### 1.7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매수인은 홍보물, 판매 문서 및 기타 적절한 문서의 사본 등 Lenzing 상표의 적절한 사용에 대한 증거를 Lenzing Aktiengesellschaft 에게 제시한다.

#### 1.8

매수인은 라이선스된 상표와 관련하여 매수인이 판매 또는 제공할 수 있는 제품이 Lenzing Aktiengesellschaft 및 라이선스된 상표와 연결된 영업권 및 명성을 보호하는 데 충분한 품질을 유지한다는 데 동의한다. 이를 위해, Lenzing Aktiengesellschaft 는 모든 제품과 관련하여 라이선스된 상표의 사용을 검사하고 승인 또는 거부할 권리를 보유한다. Lenzing Aktiengesellschaft 는 각 라이선스 기간 동안 합리적 간격으로 매수인이 본 부록에 규정된 모든 조건 및 의무를 준수하는지 여부를 평가하고 제품의 품질을 시험하기 위해 제품 샘플을 시험할 권리가 부여된다. 그러한 시험을 위해 매수인은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합리적 요청에 따라 Lenzing Aktiengesellschaft 또는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대리인에게 라이선스된 상표와 함께 판매 또는 제공되는 제품의 샘플과 그러한 검토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정보 및 문서를 제공한다.

#### 1.9

매수인은 다음을 서약하고 동의한다. (i) 라이선스된 상표를 오용하거나 명성을 훼손하지 않는다. (ii) 라이선스된 상표의 전체 기간 동안 라이선스된 상표 또는 그 일부와 유사한 다른 마크, 로고, 상표명 또는 상표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법적 보호를 준수하여 혼동, 사기 또는 실수의 가능성을 유발하지 않는다. (iii) 라이선스된 상표의 표시 및 사용과 관련된 모든 관계법(관련 직물표기법 및 규정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을 준수한다.

#### 1.10

Lenzing Aktiengesellschaft 는 라이선스된 상표의 부여와 관련하여 어떤 보증도 하지 않고 어떤 책임도 지지 않는다.

#### 1.11

이 라이선스는 납품(일반 판매 조건에서 정의됨) 시점에 효력을 발휘하고 (a) 매수인이 상품을 판매하는 때 또는 (b)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4 주 전 통지로서 라이선스를 해지하는 때 중 먼저 도래한 시점까지 부여된다.

#### 1.12

본 라이선스를 정당한 사유에 따라 즉각적으로 해지할 권리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본 라이선스를 즉각적으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i) 매수인이 본 라이선스 또는 일반 판매 조건에 따른 의무를 위반; (ii) 상품을 30% 이상 함유하지 않은 제품에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 (iii)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단독 재량으로 Lenzing Aktiengesellschaft 의 명성 또는 라이선스된 상표의 명성 또는 영업권에 악영향을 미치는 매수인의 행위 또는 행동. 법정 조항에 의해 금지되지 않는 한, 매수인이 파산, 해산 또는 청산하거나 목적 또는 효과가 유사한 다른 소송 중인 경우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즉각적으로 본 라이선스를



해지할 수 있다. 본 라이선스가 해지될 경우 매수인은 즉각적으로 라이선스된 상표의 사용을 중지해야 한다.

- 1.13** 본 부록에 규정된 범위를 넘어 라이선스된 상표를 사용하거나 **Lenzing Aktiengesellschaft** 가 소유한 다른 상표를 사용하려면 별도의 라이선스 계약이 필요하다.
- 1.14** 본 부록은 일반 판매 조건의 일부이며 단일 문서로 해석되어야 한다. 일반 판매 조건의 준거법 및 분쟁 해결 조항(섹션 18) 및 기타 조항(섹션 16)이 본 부록에 적용되며 참조로 포함된다.